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661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661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326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항소인 D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32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2020. 7. 8. 22: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삼양사거리 교차로에서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31,490원 및 이에 대해 2022.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고,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이 사건 사고는 직직 및' 부분을 '이 사건 사고는 직진 및'으로 고쳐

쓰고,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한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분을 ‘한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 당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는 녹색점멸등이었던 점, 그 후 빨간색등으로 변한 점이 인정되는 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 제1항)는 법규정을 고려해볼 때 녹색점멸등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선행하는 원고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급정차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진행 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였다면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 차량이 피고의 주장처럼 급차로 변경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해덕진, 판사 김형작

1) 피고는 단지 제1심판결 취소만을 구하나, 제1심판결은 원고 일부 인용판결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